

해남군공고 제2026-1742호

입찰방식	지역 제한	등록면허	공동 계약	낙찰자결정	공고 기간
소액(총액) 수의	해남군	건초모우기(2110170201) 물품 등록 업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소형-7270 또는 중형-7269 또는 대형-7268) 등록업체	단독 이행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3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물품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주의 사항 ※

- 반드시 해당 물품 시장조사 후 계약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 불가능한 낮은 투찰금액을 사유로 낙찰 포기 시(낙찰자 증빙서류 미제출 등 포함) 수의계약 배제 대상입니다.
- **낙찰대상자로 안내(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 증빙서류를 계약부서인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FAX : 530-5581)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낙찰대상에서 자동제외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가. 사 업 명 : 2026년 임대농기계 구입(건초모우기)
- 나. 기초금액 : 금40,040,000원(추정가격 36,400,000원, 부가가치세 3,640,000원)
- 다. 물품내역 : 건초모우기 4대 * 규격서 참조
- 라. 납품장소 :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지정장소
- 마.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바. 사업내용 : 규격서 참조
- 사.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아.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계약, 소액(총액)수의 견적입찰, 제한경쟁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 가. 견적서 제출 : 2026. 7. 10.(금) 09:00 ~ 2026. 7. 15.(수) 10:00
- 나. 개찰일시 : 2026. 7. 15.(수) 11:00
- 다. 개찰장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내에 소재한 업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초모우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11017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규격서를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형 또는 중형 또는 대형)으로 지정된 업체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o.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불가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예규에 기초금액 기준으로 $\pm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및 참가방법

-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같음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의 해납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불가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입찰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장애발생에 따른 투찰이 곤란한 경우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재무과 계약팀(☎ 061-530-5277)
 - 물품 공급: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061-531-3869)

2026. 7. 9.

해 남 군 (분 임) 재 무 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